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에 따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나. 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제21조제1항제17호”를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같은 항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발 (장어통발은 제외한다)”을 “통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
4.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5.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제73조제2항 중 “따른”을 “따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부표의 범위) ----- ----- ----- ----- -----.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1.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같은 항제17호-----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은 제외한다)	2. ----- 통발
3.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	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
<신 설>	4.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신 설>	5.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신 설>	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	② ----- 따른 불법어업 신고

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신 설></u>	자 등에 대한 ----- ----- -----.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u><신 설></u>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